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시사점

손 기 응*

- | | |
|----------------------------|----------------------|
| I. 서론 | III.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 |
| II.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법적 기초 | IV. 결론 |

Abstract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ublishing Field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ir Implication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ublication may play a role of a passage within the barrier of division that could culturally capture the sympathy with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In order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ublishing field continuously, the Inter-Korean Cultural Agreement, which includes the publishing field, must be sign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desirable to form a consortium composed of half civilians and half government officials titled the Inter-Korean Publishing Exchange and Cooperation Committee for acti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ublishing field. The method of approach, selection of fields, and the method of promotion must be sought based o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standpoint by considering an aspect of North Korea currently being negativ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ublication. Meantime,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by considering the poin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ublishing field contributing to capturing the national sympathy, cultur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Key Word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ublication
Inter-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ublication
Inter-Korean Cultural Agreement
Inter-Korean Publishing Exchange and Cooperation Committee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규모가 커지면서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 문화항목이 출판분야이다. 문화적 통합을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살아 가느냐 하는 공동체의를 함양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질화된 사회체제에서 이질화된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내재하여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우선 이질성을 인식하고, 이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출판물이다. 출판물은 정치·경제 등 다른 분야들에 비해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출판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저변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도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출판물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고려아래 이 글에서는 동서독이 분단기간 추진하였던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배경들을 이룬 서독과 동독의 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서독이 체결했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동서독이 출판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교류·협력의 현황이다. 특히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주도했던 동독의 라이프찌히(Leipzig) 독일서적거래상조합과 서독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독일서적거래상조합간의 서적관련 교류·협력을 시기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독과 동독이 내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에 대하여 가졌던 입장과 정책, 그리고 갈등을 살펴본다. 셋째,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다. 동서독이 추진하였던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남북한 출판분야 교류·협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과 한반도는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맥락에서의 상이성과 분단 상황이란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려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양 지역 상황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한 평화·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독이 동

서독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독일사
 례가 시사하는 바를 찾는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II.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법적 기초

동서독간의 출판분야 교류·협력은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틀 내에서 추진되었
 다. 따라서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킨 법적 토대도 동서독 간에 이루어진
 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합의에 포함되어 마련되었다.¹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법
 적 기초는 「기본조약」과 「기본조약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 그리고 「문화협정」
 이었다(<표 1>, <표 2> 참조).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더불어 동서독 간에 그 동안 간헐적으로
 지속되던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동독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
 서독 문화교류 ‘차단정책’(Abgrenzungspolitik)을 1950년대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분단 이전에 서독주민과 공통의 문화와 문화의식을 가졌던 동독주민이 교류를 통해
 서독 측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
 를 유지·고수하는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동독 측의 주
 요 제한수단은 문화인들의 출·입국 허가였다. 서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대동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냉전기 동안 동독으로부터의 바람직스럽
 지 못한 문화유입에 대해서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서독출판
 사에 의한 동독의 문학작가 작품의 서독출간은 공개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독의 대서독 문화교류 차단정책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

¹ 동서독간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전반적 실태에 관하여는 Bundesministerium für inner-
 deutschen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 und Dokumentation*
 (Bonn, 197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 *Zehn Jahre Deuts-
 chlandpolitik.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
 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9~1979: Bericht und Doku-
 mentation* (Bonn, 1980); Ernst Martin, *Zwischenbilanz. Deutschlandpolitik der 80er Jahre*
 (Stuttgart, 1986); Joachim Nawrocki,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ntwicklung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Berlin, 1988); 통일원, 『10년간
 의 독일정책: 1969~1979년간 동서독관계발전 중심』 (서울: 통일원, 1992); 통일원, 『동서독관계
 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서울: 통일원, 1992);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
 원, 199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유가 추가되었다. 동독은 서독이 주장하는 ‘공동의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서독의 문화를 ‘제국주의적 문화’로 비난하면서 자국의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동독공산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견해에 따르면 동서독 문화는 전혀 공통성이 없으며, 독일 전통문화유산 가운데 동독 측에 의해 승계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문화적, 인간적인 독일전통’만이 동독의 문화라고 하였다.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문화교류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문화교류는 사회주의적 동맹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이념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1995년부터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개칭)가 출발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규정된 서명국들 간의 문화교류 이행과 관련하여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교류 불이행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았으나, 동독은 국가적 차원에서 서독과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변명하였다.

동독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동독공산당 제9차 당대회 결정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①문화정책의 객관적 원칙인 정치·경제·문화의 단일한 사고방식 형성, ②문화정책을 통해 동독이라는 발전된 사회주의국가의 형성, ③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전제조건 조성, ④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와 친선·협력의 지속적 강화, ⑤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필요성 강화 등이었다.²

반면 서독은 동서독 간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문화민족’(eine Kulturnation) 개념으로부터 양독 간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1973년 1월 18일 빌리 브란트 수상(Willy Brandt)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였다. 1982년 10월 13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이 “독일인의 민족국가는 분열되었지만 독일민족은 계속 유지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이로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와 이에 관한 추가의정서 7항(<표 1> 참조)에서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기본조약」의 후속협

² Klaus-Eberhard Murawski, “Die Kulturbeziehungen zwischen der BRD und DDR,” Erika Lieser-Triebnigg ed., *Kultur im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1984), pp. 45~58.

상으로 1973년 11월 27일 개시된 문화협상은 13년이 지난 1986년 5월 6일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문화협정』(<표 2> 참조)의 체결이 다른 분야 후속협정 체결에 비하여 늦어졌던 이유는 동독이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서독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일별해 보면 이러한 동독지도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가장 자기체제에 부담이 적고 유익한 경제교류를 1948년부터 시작한 이래 우편(1970년), 통행(1972), 체육·보건(1974)을 거쳐 1986년에야 문화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독이 동독과 『문화협정』을 추진한 것은 그것이 독일정책 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양독 주민 간의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보존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문화협정』을 통해 문화분야 공동협력을 계기로 상대편 체제의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다른 군사동맹체제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정치·경제적인 구조 하에서 살고 있더라도 양독 주민 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³

서독이 주장하는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내세웠던 동독이 『문화협정』을 체결했던 주요 동기는 세계적 문화수준을 가진 서독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독의 문화수준을 과시하고 문화수준면에서 서독과 대등한 관계임을 알리려는데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내에서 문화분야 종사자, 이른바 ‘문화창조일꾼’들이 외부세계, 특히 같은 언어권인 서독과의 접촉제한으로 고립감과 정신적인 소외감이 증대되어 이들의 불만이 체제유지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문화협정』을 통한 서독과의 문화교류 증대를 이를 해소시켜주는 배출기능(Ventilfunktion)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양성과 자유분방함을 속성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상, 중앙집권적인 통제사회하의 동독 문화수준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서독 문화수준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동독은 문화인들의 불만을 서독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접촉허용으로 해소하려 하였다. 즉 동독은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접촉에 한정하려 했던 반면에, 서독은 문화활동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소관으로 누구나 접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상호 문화행사 개최 회수도 서독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독

³ 이장희, “통독정책으로서 동서독간 문화협정,” 『국제법학회논총』, 33권 2호 (1988), pp. 91~98; 최정호, 『분단국의 통일과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은 일정한 회수의 접촉만을 원하였다.

『문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각 조항에 대한 쌍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서독은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Kultur)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출판, 연극, 문학, 음악, 미술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학문,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체육,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여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문화협정』의 의의가 기술된 전문에서 동독은 전문의 삽입을 통해 『문화협정』이 다른 양독 조약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강조하려 한 반면, 서독은 『기본조약』의 후속협정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CSCE의 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화협정』이 체결됨을 언급하였다. 문화협력의 주체를 언급한 제1조에서는 서독 측의 주장으로 국가기관, 문화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각 개인들의 활동도 포함시켰다. 구체적 협력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에 출판분야의 교류를, 그리고 제6조 및 7조에 도서관분야 및 역사적 기록문서 교류를 규정하였다. 제12조에서는 『문화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2년간의 사업계획(Arbeitsplan)을 양 독일이 작성하기로 하였다. 즉 양측이 각각 50개씩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2년 동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⁴

<표 1> 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동서독간 『기본조약』(1972. 12. 21) 및 추가의정서

조 항	조 문
기본조약 제7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사법, 우편, 전신 업무,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 규정한다.
추가 의정서 II. 제7조에 대하여	(...) 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킬 의사를 표명한다. 이 목적을 위해 쌍방은 정부 간의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

⁴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as Kulturabkommen* (Bonn, 1990), pp. 35~40.

<표 2> 동서독간 「문화협정」 (1986. 5.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약의 토대 위에서,
- 상호간에 문화적·사회적 생활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상호이해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 그럼으로써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속에서,
-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규정들을 마드리드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관련시켜,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실행한다는 결심하여,
-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제1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양측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교양,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이것들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력이 해당기관이나 관청, 단체들 사이에서, 또한(이 협력이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질서에 상응하고 조약의 실현을 위한 것과 관계되며) 각 조직체들, 연합체들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협력은 그때 그때마다 자국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또한 쌍방이나 여러 측면의 법률규정과 조화시켜서, 특히 이 협정에서 거론된 협정당사국들의 의무에 관한 전문(前文)에서 완성된다.

협정당사국들은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승인한다. (...)

제5조 협정당사국들은 그들의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출판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상업적인 서적교류의 테두리 내에서 출판물 보급 및 수입 확대
2. 어느 한쪽이나, 쌍방 간에 있어 중요한 정보상의 이익 및 학문상의 이익이 되는 출판물의 간행
3. 인가에 대한 양측의 위탁 확대
4. 도서박람회 개최에의 참여

제6조 협정당사국들은 도서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협정당사국은 이점에 있어서 다음 내용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한다.

1. 국제적인 출판물 교류의 확대
2. 다양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어권 국가들을 위해 문헌목록을 작성하는 규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개정하는데 대한 협력 확대

협정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통한 협력을 촉진시킨다.

1. 대출교류의 확대
2. 참고서지 및 그밖의 정보자료들의 교환
3. 도서관분야에 있어서 비상업적 전시회의 교류
4. 정보자료 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전문회의에 참여

제7조 협정당사국들의 문서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

1. 자국의 법률규정에 근거한 공개적인 문서자료의 교류
2. 문서담당 행정기관을 통한 문서복사물의 교류
3. 전문문헌의 교류와 문서자료에 관해 알리는 것에 대한 승인
4. 우선적으로 복사물의 형태로, 기록문서의 준비를 통한 전시
5. 정보 교류, 특히 국제관계의 중요한 전문회의에 참여 (...)

제12조 협정당사국들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여 그때 그때마다 2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합의를 본다.

그러나 협정의 목표에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문화사업계획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조치들에 대한 장려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Ⅲ.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배경들을 이룬 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서독이 구체적으로 출판분야에서 추진하였던 교류·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은 이를 주도했던 동독의 라이프찌히와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했던 독일서적거래상조합(獨逸書籍去來商組合,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들 두 조합은 독일의 분단으로 잉태되었고, 이후 이들 간의 활동이 양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역사와 발전이었다. 1945년 분단 이후 동서독 간에 이루어졌던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⁵

1.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거래상조합

경제적 조직체로서 출발한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의 목적과 임무는 독일

⁵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에 관해서는 특히 마르크 렘슈텃트(Mark Lehmsstedt)와 지그프리트 로카티스(Siegfried Lokatis)가 1997년에 공동으로 편집한 『장벽 속의 구멍. 내독간 서적 교류』(Das Loch in der Mauer. Der innerdeutsche Literaturaustausch)를 주로 참조하였다. 이 책은 제5회 “라이프찌히 서적사(書籍史) 연구회”(Leipziger Arbeitskreis zur Geschichte des Buchwesens)에 참가한 동서독 출신 2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통일 이전 동서독간 서적 교류에 관해 발표한 논문들을 편집한 것으로서 내독간 서적 및 출판물 교류를 가장 포괄적,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Mark Lehmsstedt and Siegfried Lokatis eds., *Das Loch in der Mauer. Der innerdeutsche Literaturaustausch* (Wiesbaden: In Kommission bei Harrassowitz Verlag, 1997).

서적거래상들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1825년 설립된 이후 독일서적거래상들과 업계의 이해를 결집하는 사부(師傅)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다. 조직의 이해를 구현하는 본래적인 목적 외에 조합의 또 하나의 임무는 독일국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서적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은 『독일서적목록』(Deutsches Bücherverzeichnis)과 기관지로서 『독일서적거래상조합지』(Börsenblatt für den deutschen Buchhandel)를 발간하였다.

나찌가 권력을 장악한 후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의 활동과 발전은 암흑기를 겪게 되었다. 1934년 ‘제국독일서적거래상연맹’(Bund Reichsdeutscher Buchhändler)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치적으로 총통의 노선을 추종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모든 자립적인 서적거래상과 출판사들이 여기에 귀속하게 되었다.

독일이 항복한 이후 연맹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독일은 미·영·불의 서방연합군과 소련이란 두 적대적인 체제로 분단·점령되었다. 독일 전역이 탈제국화, 탈나찌화 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소련이 점령하였던 동부지역의 경우 더욱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서방연합국이 점령하였던 서부지역과는 반대로 동부지역은 소유권 몰수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쳤고, 이는 출판사와 서적거래상들의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많은 자립적인 출판사와 서적거래상들이 사적 소유를 몰수당하고 회사는 국유화로 귀속되었다.

국토의 분단은 여지껏 잘 운영되어왔던 독일서적거래상들의 출판 및 유통망도 근본적으로 파괴시켰다. 서적출판의 중심지는 소련이 점령하였던 독일의 동부지역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라이프찌히가 독일 서적거래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견본시(見本市)였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출판사들은 분단으로 인해 가장 판매가 활발했던 서부지역이란 시장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점령자 소련이 라이프찌히를 서적 및 출판의 도시로 계속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었다.

1946년부터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의 재활동이 허가되고, 서적거래상조합지가 다시 발간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1946년 분단된 서독지역의 프랑크푸르트에 독일에서 두 번째로 서적거래상조합이 결성되었던 사실이 영향을 주었다. 라이프찌히 조합의 재활동은 물론 독립성의 훼손을 전제로 하였다. 이제 조합의 기능은 소속회원들의 이해를 보장하려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조합을 대변했던 기관지인 조합지는 점차 동독체제의 선전지로 그리고 서방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적 서적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매체로 이용되었다.⁶ 조합의 존재는 전반적으로 동서간의 정치적 대결과 동독정부의 지침에 의해 그 방향성이 규정되었으

며, 본래의 임무는 오히려 중앙에서 지도되는 ‘라이프찌히 중개 및 대서적거래상’(Leipziger Kommissions- und Großbuchhandel, LKG)과 ‘인민서적거래상’(Volksbuchhandel)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이 독일전역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중요성은 무시될 수 없었고, 이를 감안한 동독정부는 조합의 창립 130주년인 1955년부터 라이프찌히 조합을 점차 전면에서 세우기 시작하였다.

1958년 라이프찌히 조합은 조직의 기능을 다시 정립하면서 재도약을 모색하였다. 정관에 조합의 자문 및 지원기능을 명시하면서, 서적거래에 있어서 이념적 활동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공개적인 접촉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시 동독 내에 여전히 자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중개거래상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1,000개 이상의 서적거래상들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였다. 서적을 통한 홍보란 의미에서 조합은 동독 정치지도부의 유용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1971년 라이프찌히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의 회의에서 정관에 그 목적을 “우리의 사회주의적인 민족서적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한데서 나타났다.

라이프찌히 조합은 ‘도서학’(Buchkunst)분야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1959년 국제도서학전시회(Internationale Buchkunst- Ausstellung)를 기회로 독일서적거래상들 간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국제적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프찌히 시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상(Gutenberg-Preis)에 조합은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주된 임무는 실제 서적시장의 요구에 반응하기 보다 동독지도부의 이념홍보였다. 동독지도부에 의해 제기된 정책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자립적인 민간출판사를 최소화하고, 새로 정립된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포함되었다. 당연히 체제지도부의 노선에 충실한 사람들이 조합의 고위직을 차지하였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대동독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의 결과 동서독이 체결한 각종의 조약들은 라이프찌히 조합의 활동과 대서독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다. 그리고 통일 이후 라이프찌히 조합은 프랑크푸르트 조합에 합병되었다.

⁶ 예를 들어 Klaus Gysi는 1961년 조합지 38호를 통해 사회주의적 서적정책(Literaturpolitik)의 우월성을 홍보하였다.

2. 프랑크푸르트 독일서적거래상조합

1945년 미국의 도움으로 다수의 출판인들이 라이프찌히를 떠나 서부지역에 이주하였고, 이들은 비이스바덴에 라이프찌히 조합의 분사(分社)격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45년 10월부터 조합지를 발간하였다. 새로운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력은 머지않아 라이프찌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 출판인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여기에는 또한 전후에 모든 전국적인 연결망을 가진 카르텔과 카르텔에 유사한 조직의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미국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1946년 프랑크푸르트에 ‘서부지역 독일서적상’(Deutsche Bücherei des Westens)이 설립되었고, 그 후 ‘서적상연합’(Buchhändler Vereinigung)과 같은 많은 개명(改名)을 겪은 후 1955년 ‘프랑크푸르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각 연방주의 출판 및 서적상연합들도 포함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1949년 정관에 조직의 전 독일적인 성격과 분단으로 인한 현재의 잠정적인 성격을 명시하였다.

서독 내 전 연방적인 경제연합체로 출발한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처음부터 강력한 각 연방주의 조합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었다. 또한 동독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각 주 정부에 대한 사전 통고와 승인이 필요하였다. 서독이 독일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체제임을 주장함으로써 조합의 활동입지는 좁아졌고, 출판과 관련하여 시장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유롭고 스스로 조정되는 시장의 정착을 주장하였던 서방 연합국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출발 당시 조합의 위치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당시의 주요 임무는 저작권문제, 출판물검열, 정관변경, 저작권문제, 각 연방주연합과 중앙조합간의 중개 등이었다. 조합의 홍보통로는 비이스바덴에서 발행되는 조합지였고, 조합지는 현안에 관해 논쟁하는 포럼으로 기능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합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적은 거래상품으로서 경제적 성격을 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것이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1951년부터 문화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서적거래상이 수여하는 평화상을 제정하여, 하나의 커다란 문화정치적 포럼으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작가 한스 슈바르츠(Hans Schwarz)와 출판인 프리드리히 비티히(Friedrich Wittig)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평화상은 양진영 간의 평화적인 협력과 상호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수상자는 전후 서독의 사회와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상을 유대인계의 사람에게 주려는 시도는 독일의 과

거사청산과 맞물린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예를 들어 1967년 평화상을 수상한 에른스트 브로흐(Ernst Bloch)의 인생역정은 독일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동독의 비밀기관인 국가보안성(Staatssicherheitsdienst), 이른바 “슈타지”(Stasi)로부터 추적당해 라이프찌히로부터 쫓겨나 서독으로 탈주하였고, 거기서 그의 반공산주의적 증오는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라이프찌히 조합과 프랑크푸르트 조합을 비교하는 일은 설립 당시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서로가 상대방을 전제로 존재하였고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9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Buchmesse), 혹은 서적견본시장이 시작되면서 양 조합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서독연방주인 헤센의 서적거래상연합이 시작하여 프랑크푸르트 조합이 추진을 넘겨받은 도서박람회는 처음에는 동독의 출판중심지였던 라이프찌히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점차 큰 성공을 거두자 동독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접촉하려 몰려드는 동독의 수많은 출판사들에 대해 서독 당국과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동독에서 출판사를 몰수당하고 서독에 이주하여 출판사업에 종사하였던 이들이 동독 출판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점과 도서박람회의 정치화를 경계하고자 했던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다. 1956년부터 도서박람회 주최 측은 따라서 정치적인 폭발성을 포함하지 않은 동독의 서적을 전시하는 공동전시장을 이들에게 할당하였다.

물론 라이프찌히 도서박람회에 참가하려는 서독의 출판인과 서적들도 동독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참가를 저지하여 소속회원들이 라이프찌히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3.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 전개과정

종전 직후 전승연합국은 독일의 정치적 활동과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통제하였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지침은 연합국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내독간의 상품거래도 연합국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이 여러 점령지로 나뉘졌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통제지침은 불가능하였고, 여러 상이한 결정이 혼재하였다. 따라서 1947년 연합국의 관리자문단(Kontrollrat)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문, 잡지, 영

화 및 서적의 자유로운 교환을 천명하였지만, 서적 및 출판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출판물거래와 이에 대한 규정은 실제 연합국의 각 점령지에 따라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 9월 영국점령군의 당국은 소련이 판권을 가진 출판물들의 자국 관할 점령지에의 반입을 금지하였다. 1947년 12월에는 서적이나 잡지를 사전에 영국군 관리 당국(이른바 'Public Relations Information Services Control')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은 것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였다. 물론 소련 측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하여졌지만 서방연합국의 조치가 더욱 엄격하여 독일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컸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출판사들도 전승국들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각 점령지역 간의 서적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려는데 이해를 같이하였다. 그 결과 1948년 초부터 물류유통회사인 리베로트(Spedition Lieberoth)는 프랑크푸르트-라이프찌히-베를린을 연결하는 서적열차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서방연합국 점령지역과 소련점령지 간의 서적교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서베를린에 근거지를 두었고 전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과거 베를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유지하였던 지사들과의 접촉을 재개하려 했던 스프링거출판사(Springer Verlag)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라이프찌히에 근거지를 두고 서부지역의 비이스바덴에 지사를 설치하였던 인젤출판사(Insel Verlag)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나아가 당시 독일의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하여 출판·인쇄의 능력과 규모가 훨씬 컸던 것도 이러한 동부지역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원인이 되었다.

전쟁 직후의 상황은 혼란이란 말로 밖에 표현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적거래상들은 서적을 양 지역에서 취득하고, 양 지역 간에 전달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다. 서적거래상들이 서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서지역 간의 반출입 통로를 가지지 못하였던 서부지역의 거래상들은 동부지역의 출판사를 방문하여 현금을 주고 서적을 구입한 다음 그것들을 국경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우편으로 부치게 하고, 야밤에 국경을 넘어 이 서적들을 가져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서적을 가져오는 일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각 점령지간 통행증을 소지한 자들을 활용하였다.

1948년 6월 독일 서부지역에서 화폐개혁이 실시되자 동서지역 간의 상품거래에 대하여 서방의 전승국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각 연방주 경제성들이 내독간의 거래에 대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9년 9월 서방연합국은 서독(1949년 10월 7일 건국)의 당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공산주의적 선전물들이 서독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섭권은 유지하였다. 1949년 건국 이후 내독간의 거래는 서독의

연방경제성, 내무성, 법무성 그리고 전독일문제성(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⁷에 의해 다루어졌다. 연합국들은 서독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였으나, 동독선전물들이 완벽하게 걸러지지는 못하였다. 동서독간의 서적 및 잡지의 교류는 동서독간의 갈등, 그리고 상호 선전물 반입에 대한 우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48년의 화폐개혁과 이어진 베를린봉쇄에 따라 동서지역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서적의 교류는 결코 차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동서독의 건국으로 인해 서적교류는 특정분야에서 증가를 보였다. 예를 들어 동독은 경제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서적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수많은 전문적, 학술적 출판사들이 원래 동독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분단 이후 서독으로 이전한 여파로 인해, 동독지역에 남아 국영화된 출판사들은 이제 동독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서독으로부터 반입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독의 출판사들도 과거 동독지역에서 가졌던 판매시장을 쉽게 단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많은 서독의 인쇄소들에게는 좋은 출판을 위해 필요한 경험과 Know-how가 동부지역의 모출판사(母出版社)에 비해 결여되었던 점도 동서간의 교류를 필요케 하였다. 결국 동서독 지역의 출판사 공히 내독간의 서적교류가 큰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신속한 쌍방간의 합의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동독과 서독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이에 따라 1949년 10월 ‘프랑크푸르트 협상’(Frankfurter Verhandlungen)이란 이름하에 개최되었으나,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후 주로 베를린에서 비밀협상이 지속되었다. 동독의 마르크화(Mark)와 서독의 마르크화(D-Mark) 간의 환가치 차이로 인해 동서독간의 서적거래는 주로 대량의 서적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⁸

1950년 동서독의 독일서적거래상조합들은 베를린에서 내독간 서적거래를 위한 경제협정이 필수적임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50년 7월 서베를린의 중개 및 대서적거래상인 에른스트 그로비히(Ernst Globig)와 라이프찌히 LKG 간에 경제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학술서적의 교류를 포괄하였으나, 그 실현은 수차에 걸쳐 연기되었다.

따라서 서적거래에 관한 두 번째의 협정, 이른바 ‘내독간 협정’(Interzonen-Abkommen)이 수개월에 걸쳐 논의되었으나, 쌍방의 입장차이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가장 큰 쟁점은 예상되는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서적 반출이 과다함에

⁷ 1969년부터 내독관계성(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으로 개칭되었다.

⁸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이후 이러한 형태의 서적거래는 불가능해졌다.

따라 발생하는 동독이 부담해야 할 차액분을 어떻게 상쇄하여 청산할 것인가였다. 그 타개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동독업체에게 인쇄주문을 주는 것이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서독의 인쇄연합체들이 자국의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반발하였다. 서독의 연방경제성도 여기에 공감하였다.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데에는 내독간 서적거래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 예를 들어 1950년 9월 동독정부가 서베를린에 대해 전기와 식수를 단절한 것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서적의 반입은 지속되었다. 반면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서적을 입수하는 일은 특권층이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어렵고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었다. 마침내 1951년 7월 「경제 및 무역에 관한 베를린협정」이 체결되었고, 1년 후 효력이 발생되었다.⁹ 이 협정은 서적거래에 다른 상품거래와는 달리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동서독 간에 상호거래에 의해 청산되지 못하는 초과분에 대하여 동독의 출판·인쇄소에 인쇄주문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서독간 서적거래를 크게 훼손시킨 문제 중의 하나는 서독의 출판사가 동독의 출판·인쇄소에 의뢰한 출판주문과 관련되었다. 이는 내독간 서적거래로 인해 발생한 동독이 지불해야 할 초과분을 서독출판사가 동독의 출판사 및 인쇄소에 대해 주문을 발주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모든 서독내 출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서독 출판사들의 서적공급은 이들 출판·인쇄를 맡은 동독의 업자들이 얼마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한 동독의 업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종이의 부족이나 여러 이유로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독의 전문서적이 예정보다 훨씬 늦게 출판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의 출판사들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출판·인쇄소를 선호하게 되었다.

베를린협정에서 합의되었던 내독간 서적거래 규모의 상한선은 1955년 마침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서적의 반입을 위한 사전의 반입승인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한편 1955년부터는 문학작품들의 거래도 가능하여졌으나, 여기에 대하여 서독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동독 문학작품의 반입문제는 특히 이 시기에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KPD)이 헌정질서에 반(反)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연방재판소의

⁹ Peter Bender, *Die Neue Ostpolitik und ihre Folgen. Vom Mauerbau bis zur Vereinigung* (München, 1995).

판결과 관련되었다. 1956년 서독 내에서 독일공산당의 활동이 금지되자 이 결정은 서독주민들의 여론과 서독의 정부에 영향을 미쳐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한 문학작품의 반입은 통제되었다.

한편 베를린협정이 발효된 이후 프랑크푸르트 조합은 정기적으로 서독으로 반입이 금지된 동독의 서적명을 목록화하여 발간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동독지역에서 출판사를 몰수당한 후 서독에서 새롭게 출발한 출판사와 이름을 같이하는 원(源) 동독지역의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들이었다.

동독에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언론출판물들을 우편을 통해 배포하는 우편시사잡지판매(Postzeitungsvertrieb, PZV)가 운영되었다. 동베를린의 동부역 부근에 본사를 둔 PZV는 독일체신부(Deutsche Post)에 속하였고, 모든 허가된 신문과 잡지의 목록이 기재된 우편시사잡지목록(Postzeitungsliste)을 발간하였다.¹⁰ 동독은 이 PZV를 출판물을 검열하는 수단 그리고 출판물 배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동독의 경우 중앙집중적으로 잘 통제 및 조직화된 서적판매소를 통해 서적의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전문서적들에 대한 엄격하고 정밀한 검열이 진행되었다. 1954년 동독의 우편시사잡지목록에 의하면 서베를린의 출판사가 발간한 161개의 학술잡지가 허가되었다.¹¹ 배포의 금지를 위해 상당수의 특정단어들이 확정되어 검열에 활용되었다. 이로써 우편시사잡지목록은 서방서적의 검열기능도 하는 정치성을 띠었다.

동독은 1955년 3월 이후 의도적으로 서독의 잡지에 대한 구매를 크게 줄였다. 서독정부는 이에 따라 동년 8월 서독의 우편시사잡지목록에 동독의 시사잡지를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동독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동독의 우편시사잡지목록에 108개의 서독 학술 및 전문잡지를 게재하였고, 서독은 자체 우편시사잡지목록에 92개의 동독 잡지명을 게재하였다. 서독의 우편판매망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시사잡지에 대한 서독의 관심은 미미하였다.

1954년 프랑크푸르트 독일서적거래상조합은 조직내 대외무역위원회 산하에 “내독간 거래를 위한 상임위원회”(Ständiger Ausschuß für Fragen des Interzonenhandels)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내독간 서적거래를 추적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조합의

¹⁰ 대개 대도시에 국한되어 운영되었던 PZV는 만성적인 종사자의 결핍으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신뢰성부족을 일으켰다.

¹¹ 이 시기 서독에는 공식적으로 4개의 동독 시사잡지만 공급되어졌다. 서독에서는 동독의 우편시사잡지목록을 통해 동독의 잡지를 구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서독의 수입업자를 통해 동독의 잡지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차보고서에 게재하였다. 이미 1952년부터 서적시장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통계가 시작되었지만, 1966년부터 내독간 서적거래에 관한 통계와 자료가 공개적으로 출판되었다.¹²

동서독 대표들 간의 협상 시작부터, 특히 동독 측에 의해 내독간 서적거래에서 문학작품들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기는 하였으나, 표면화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는 서독의 전문 및 학술서적에 대한 동독의 커다란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학작품이 가질 수 있는 정치이념성도 문학서적의 교류에 동서독 쌍방이 주저케 하는데 기여하였다. 서독의 경우 문학서적의 교류에는 연방경제성 외에도 내무성, 법무성, 내독성 등이 관여하였다. 동독 측의 요구에 의해 서독의 경제성은 소수의 동독 문학작품의 반입을 찬성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 조합과 같은 많은 서독의 단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문학서적의 교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확정적인 사실은 동독의 문학작품에 대한 서독의 관심이 서독의 문학작품에 대한 동독인의 관심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1950년대 말부터 서독의 대형서적상들은 동독의 문학작품을 위한 창고를 건립하였고, 1960년대 말부터 서독의 대도시에는 정치적 문학작품을 포함한 동독의 문학작품을 판매하는 서점도 나타났지만, 서독인의 관심은 소수에 국한되었다. 여기에는 동독의 작품에 대한 홍보와 평론의 부재도 일조하였다.

양 독일의 작가들이 출판사를 확정하고 쌍방의 다른 독일지역에 작품을 알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순회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전하거나, 프랑크푸르트 및 라이프찌히 도서박람회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도서박람회에는 주요 거래상들이 분야별로 동일한 공간에 서적을 전시하였다. 라이프찌히 박람회의 경우 서독의 학술서적이 우선시 되었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독의 문학작품들도 정기적으로 전시되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서는 동독의 서적들이 하나의 공동공간에 전시되었는데, 그 공간은 라이프찌히 박람회에서 서독의 출판사들이 할당받은 공간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다. 여기에 대해 동독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였으나, 동서독간의 출판 규모를 감안한다면 이는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1980년 동독의 출판사들이 6,100권의 책을 출간한 것에 비하여 서독은 67,200권을 출간하였다. 출판사의 수도 동독이 약 60개인 것에 반해 서독은 약 2,000개를 헤아렸다.¹³ 앞서 지

¹² 프랑크푸르트 조합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하여는 Ernst Umlauff, *Der Wiederaufbau des Buchhandels.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Büchermarktes in Westdeutschland nach 1945* (Frankfurt a. Main, 1978).

¹³ 물론 1980년 당시 서독의 인구가 59.1백만 명이었고 동독의 인구가 16.7백만 명이었던 점을 감

적한 바와 같이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서는 서독의 출판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동독 출판사, 즉 동독정부가 몰수하여 국영화된 출판사들이 출판한 서적은 전시가 허용되지 않았다.

쌍방의 박람회에서 동서독의 서적들은 동독과 서독이란 공식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내독간 거래에 의한 서적들’(Bücher aus dem innerdeutschen Handel)이란 이름하에 전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로 동서독이 상호 인정하게 됨에 따라 사라졌다.

4.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 독일의 갈등

동독의 지도부는 서독의 서적들을 자본주의적 계급적대세력의 전위로서 뿐만 아니라, 나찌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반동적이며 파시스트적인 독일의 대변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그 동독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서독은 동독의 서적들이 동독 사회체제와 이념을 전파하려는 동독국가의 하수인으로 여겼다. 동독을 포함하는 동구사회주의권의 서적에 대한 서방진영국들의 우려, 특히 서독의 우려는 매우 컸고 따라서 서독 역시 동독 서적들의 자국내 유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동독은 동독에서 출간된 서적의 판매와 유통에 대하여 서독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범죄시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줄곧 제기하였다. 사실 동독의 서적들의 서독내 유입과 확산에는 여러 기관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서독이 미·영·불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었던 1947년에는 서독으로 정치적 서적의 유입이 금지되었다. 1956년 서독 내에서 공산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난 후 ‘국가를 위협하는 서적’(staatsgefährdende Literatur)에 대한 정치적 형법(刑法)이 더욱 엄격해졌다. 냉전 시기에 조성된 동서독간의 점증한 갈등과 서독의 높아진 형법 등은 내독간 서적거래에도 확연하게 영향을 미쳐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서독의 거대한 관료조직에도 불구하고 서독에서 동독의 서적을 주문하기는 비교적 간단하였다. 서독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동독의 서적목록은 매년 연방소식지 그리고 프랑크푸르터서적지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서독인이 동독의 서적을 주문할 경우 그 주문한 서적이 서독의 국가를 위해하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했다. 문

안하더라도 서독의 출판사 수와 출판 규모는 동독을 크게 앞질렀다.

제는 국가를 위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가였다. 법기관에 따라 판단에서 여러 상이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었고, 그것은 실제에서도 나타났다.

1961년 뮌헨의 출판인인 빌리 바이스만(Willi Weismann)에 대한 소송이 한 예이다. 바이스만은 동독으로부터 서적을 다량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그가 구매하고자 하는 서적이 국가를 위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서적을 그러한 이유로 주문하면 되지 않는지 등을 수 차례 걸쳐 문의하였다. 오랜 기다림과 계속적인 문의가 이루어진 후 그는 바이에른 정부로부터 몇 가지 서적에 대해서만 주문이 금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그는 1960년 9월 동독의 서적을 다량 주문하였다. 그러나 주문된 서적들은 서독의 국경세관에 의해 압류되었고, 그는 국가를 위해하는 서적을 유입하려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재판과정에서는 ‘국가를 위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 사례는 당시 서독이 동독의 서적을 국가를 위해한다는 명목으로 언제라도 압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개념에 대한 정의나 체계적인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연방주들은 상이하게 이를 해석,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서독의 서적상과 출판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동독의 서적을 대하는데 항상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¹⁴

법적 처벌은 1961년 서독의 연방의회가 「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배포금지에 관한 관리법」(Gesetz zur Überwachung strafrechtlicher und anderer Verbringungsverbote)을 강화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국가를 위해하는 서적은 국경에서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에서 1965년 사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연 평균 약 80만건의 서적송부가 압류되거나 폐기되었다. 이들 가운데 실제 어느 정도의 서적이 국가를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될 수 없다. 공공도서관은 물론 사설도서관도 형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시기에는 장서 가운데 국가를 위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되었다. 1964년 시사지 『슈피겔』(Spiegel)은 심지어 연방의회 의원에게 전달되어야 할 서적들도 폐기되었다고 폭로하였다.

동독의 출판 및 서적과 관련한 어려움이 서독주민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독에서 온 출판인과 작가들도 특정한 경우 서독연방기관에 의해 추적되었고, 그 상징적인 사례가 동독의 출판인인 귄터 호페(Günther Hofé)가 1963년 프랑크푸

¹⁴ Stefan Tiepmar, “Bürgerkriegsliteratur und andere staatsgefährdende Schriften. Westdeutsche Loch in der Mauer. Der innerdeutsche Buchaustausch,” in: Mark Lehmstedt and Siegfried Lokatis eds., *Das Loch in der Mauer*, p. 56.

르트 서적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하노버에서 서독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었다. 서독검찰청은 그가 동독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였다는 혐의를 두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고, 심지어 동독의 외무상이었던 하인리히 베커(Heinrich Becker)는 이를 유엔회의에서도 거론하였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페는 동독의 국가보안성과 서독의 본에 소재한 소련의 정보기관을 위해 실제 일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서독정부는 호페의 석방과 관련한 동독과의 협상을 동서독 간에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 특히 서독은 동독에 수감된 서독주민과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는 대가로 서독으로 건너오게 하는 이른바 ‘석방거래’(Freikauf)를 동독과 협상하였다.¹⁵ 결국 지루한 협상 끝에 호페는 석방거래란 틀 속에서 동독으로 귀환하였다.

또 다른 상징적 사례는 1967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서 일어난 국가를 위해 한다는 서적을 둘러싼 동서독간의 대립이었다. 도서박람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어떤 동독의 서적과 출판사가 참여될 수 있고 될 수 없는지가 논란되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서적거래상조합이 가졌던 기본정책은 동독 서적과 출판사의 참여를 거부, 특히 서독의 출판사와 동일한 상호를 가진 동독출판사(동독에서 출판사를 경영하다가 분단 이후 동독정부의 몰수로 인해 서독으로 도피한 출판인이 동일한 상호로 서독에서 개업함에 따른 동명출판사), 이른바 ‘동명출판사’(Parallelverlage)와 그 출판사가 발간한 서적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동독은 이 조치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독의 출판사들은 동독 동명출판사들의 박람회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졌고, 실제 이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유서 깊은 동독의 출판사인 ‘레크람 라이프찌히’(Reclam Leipzig)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박람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동명의 서독출판사는 나아가 동독측 동명출판사가 발간하는 서적의 서독내 유통을 금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도서박람회에의 참여가 허가된 동독 서적들의 전시에 있어서도 동독의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란 이름이 가능한 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독의 서적들이 전시된 공간은 ‘내독간 거래에 의한 서적들’ 혹은 ‘여러 전문분야의 출판사들’(Verlage mit verschiedenen Sachgebieten) 등의 뜻말이 붙여졌다.

동서독간의 갈등은 소련이 만일 서독이 동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¹⁵ 손기용,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서울: 통일연구원,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철회되었다. 결국 소련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이는 전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참여거부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독의 집행부에 의해 앞서 거부된 동독의 출판사와 서적들이 도서박람회에 참여하고 전시될 수 있게 되었다.

서독에 의해 거부되었다가 다시 참여가 허용된 동독의 출판사 가운데는 동독의 국립출판사도 포함되었다. 국립출판사가 발간하여 도서박람회에 전시된 책 가운데 『갈색의 책』(Braunbuch)이란 서적은 당시 서독의 연방대통령이었던 하인리히 뢰프케(Heinrich Lübke)가 나찌시대 때 강제수용소를 건설하는데 조력하였다고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사건은 커다란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여 연방의회에서 대동독 외교정책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비화하였고, 결국 이 책은 도서박람회에서 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발간한 출판사의 전시공간도 폐쇄되었다.

한편 이 책은 다른 측면에서도 서독 국내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독일의 과거사를 진실로 보고 진정하게 반성하려는 지식인들 그리고 서독의 출판사인 ‘주르크ampf’(Suhrkamp)를 포함하는 33개의 서독 출판사들이 이 책의 압류조치를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고, 120명의 출판인들이 그 책을 주문하였다.

1960년대까지 전개되었던 출판사와 서적과 관련한 동서독 간의 갈등은 브란트 수상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간 화해가 모색되고 동서독간 교류가 활성화되자 점차 완화되어졌다. 그리고 출판사와 서적의 교류도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통일이 된 후 라이프찌히 서적거래상조합은 1991년 1월 프랑크푸르트 서적거래상조합에 합병되었다.

5.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 현황

가. 일반출판물의 교류 현황

1955년 출판물 교류의 상한선이 폐지(문학작품은 제외)됨에 따라 동서독간 출판물 교류는 크게 활성화되었다. 1956년 서독은 1천4백만VE¹⁶에 달하는 서적과 잡지를 동독에 공급하였으며, 이에 반해 동독은 3백4십만VE의 출판물을 서독에 판매하였다. 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출판물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안정화·정상화되었

¹⁶ ‘VE’는 동서독간 상거래를 결재하기 위한 ‘청산결재단위’(Verrechnungseinheiten)로서 1VE는 1DM(서독 마르크화)에 상응한다.

다. 1961년 8월 12일 베를린장벽이 건설된 후 동서독간 모든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1964년에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3>은 분단기간 동서독간 출판물의 교류 현황을 보여준다(서독년감: *Statistischen Jahrbu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참조). 여기에는 예술 작품이나 예술적 카드의 출판물, 악보, 인쇄증명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학술적 저작물, 문학작품, 신문과 잡지간의 명확한 구분에 따른 거래량은 알 수 없다. 또한 얼마의 판권이 지불되었는지도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동서독간 교류량의 규모를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 동서독간 출판물의 교류 현황

(단위: 1,000VE)

	동독으로의 반출			서독으로의 반입		
	책	신문/잡지	거래액	책	신문/잡지	거래액
1958	5,953	4,368	10,321	8,135	3,737	11,872
1962	4,266	4,354	8,620	6,880	2,694	9,574
1967	5,910	6,601	12,511	10,581	3,742	14,323
1979	6,343	12,653	18,996	16,869	1,329	18,198
1987	13,987	14,355	28,342	24,200	1,949	26,149

1958년의 경우 출판물의 동독반출이 1천3십만VE, 서독반입이 1천1백9십만VE이었던 거래액은 1987년에 이르러 각각 2천8백3십만VE와 2천6백1십만VE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액은 대략 이 30년 기간 동안의 출판물 가격의 상승액에 일치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동서독간 출판물의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탄력적이지 못하였던 동독 출판업의 사정을 파악한 서독의 출판사들이 동독의 출판사들과 출판계약을 증가시키지 않으려 했던 점,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독이 학술서적에 이르기까지 이념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이념화된 서적을 서독이 반입하지 않았던 점 등이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의 외환부족도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동서독간 반입·출액의 균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이 외화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었고, 초과분을 상쇄하기 위해 동독이 받은 인쇄주문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동독이 이를 외환으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¹⁷ 특히 동독의 출판·인쇄소들이 남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 서독으로부터의 주문이 줄어든 것도 출판물거래 증가를 제한하였다.

동서독간 서적의 교류는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간 국경선의 철책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주민들을 연결시켜준 ‘장벽 속의 구멍’(Loch in der Mauer)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표 4>는 동독으로 공식적으로 유입된 서독서적의 규모를 보여준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총 1,972,535 종류의 서적이 동독으로 반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838,582 종류의 서적이 서독으로 유입되었다.¹⁸

<표 4> 동독으로 반출된 서독의 서적종류

년 도	서 적 수	년 도	서 적 수
1961	36,477	1976	65,418
1962	38,271	1977	71,395
1963	48,108	1978	69,754
1964	50,388	1979	71,525
1965	46,457	1980	69,938
1966	53,683	1981	73,663
1967	55,704	1982	75,957
1968	52,200	1983	79,182
1969	54,568	1984	91,377
1970	54,346	1985	88,414
1971	63,185	1986	90,038
1972	61,838	1987	95,464
1973	59,950	1988	129,103
1974	59,441	1989	103,276
1975	63,415	1961~1989 총합	1,972,535

¹⁷ Heinz Sarkowski, “Die Anfänge des deutsch-deutschen Buchhandelsverkehrs(1945-1955),” in: Mark Lehmstedt and Siegfried Lokatis eds., *Das Loch in der Mauer*, pp. 105~106.

¹⁸ Gottfried Rost, “Die Deutsche Bücherei als ‘Loch in der Mauer’,” in: Mark Lehmstedt and Siegfried Lokatis eds., *Das Loch in der Mauer*, p. 134.

나. 고서적의 교류 현황

동서독간 고서적의 교류는 일반출판물의 교류 현황에는 공식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고서적의 경우 동서독간의 거래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서 1949년 동독의 건국에 이르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전 분단기간을 통하여 동서독간의 ‘교류’(Austausch)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출되는, 동독의 입장에서 ‘수출’(Export)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수출을 통해 외환을 획득하려는, 경제성의 측면에서 서독과의 출판물거래를 추구하려는 동독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동독의 박물관들은 외부전시 혹은 내부단장이란 명목 하에 대규모의 고서적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고서적 수집가들은 고서적거래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착복하고 있다는 대대적인 비난과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고서적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고서적의 수출은 ‘국가예술거래부’(Staatlicher Kunsthandel) 혹은 ‘예술 및 골동품 유한회사’(Kunst und Antiquitäten GmbH)를 통해 추진되어, 대부분의 경우 서독의 상인들에게 판매되었다. <표 5>는 동독 내 고서적의 거래와 그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규모를 보여주며, <표 6>은 동독 고서적 수출입 거래와 그 중에서 대서독(서베를린 포함) 수출이 차지하는 규모를 보여준다.¹⁹

<표 5> 동독의 고서적 거래 및 수출 현황

	고서적 총거래 (1,000 동독M)	고서적 수출			수출이 총거래에 차지한 비중
		계획(A) (1,000 동독M)	실제 수출(B) (1,000 동독M)	B/A (%)	
1963	5,047.0				
1964	5,323.4				
1965	5,742.9				
1966	6,132.3	1,651.7	2,112.2	127.8	34.4
1967	6,590.4	1,884	2,226.3	118.2	33.8
1968	7,097.0		2,686.5	103.3	37.8
1969	7,446.0	2,825	3,019.5	106.8	40.5
1970	7,940.0	3,100	3,034.5	97.8	38.2
1971	8,129.0	3,500	2,948.9	84.3	36.3
1972	9,325.0	3,190	3,094.5	97.0	33.2
1973	10,0541.0	3,460	3,463.2	100.1	34.4

¹⁹ Heidi Karla, “Der Handel mit antiquarischen Büchern aus der DDR in die BRD,” in: Mark Lehmstedt and Siegfried Lokatis eds., *Das Loch in der Mauer*, pp. 109~119.

<표 6> 동독의 고서적 수출입과 대서독(서베를린 포함) 수출 현황

	고서적 수출·입 총액(A) (1,000 동독M)	대비사회주의 국가고서적 수출 총액(1,000 동독M)	대서독 고서적 수출 총액(B) (1,000 동독M)	B/A (%)
1970	2006.1	1434.0	642.9	32.5
1971	1764.1	1326.6	671.5	38.1
1972	1810.0	1371.8	592.0	32.7
1973	1978.8	1485.2	727.0	36.7
1974	2056.5	1613.8	914.4	44.5
1975		1822.7	1242.7	
1976	2409.2	1771.2	1249.0	51.8
1977	2494.2	1832.2		
1978	2655.9	1857.5	1309.2	49.3
1979	2712.3	1840.5		47.5

다. 동서독 출판사간 교류·협력 현황

동독은 건국 이후 여러 압력을 통해 자국내 자립적인 민간출판인들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1953년 초 수많은 출판인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탈주하였다. 1878년에 설립된 구스타프 피셔 출판사(Gustav Fischer Verlag)도 예외가 아니었다. 1953년 창사 75주년 기념식을 당시 근거지였던 동독지역 예나에서 거행하였던 피셔 출판사는 불과 수주일 후 사장이 구속되는 것을 계기로 동서독의 예나와 슈투트가르트에 각각의 거점을 둔 두 개의 회사로 분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피셔 출판사는 예나(동독)와 슈투트가르트(서독)에 각각의 거점을 둔 양사 간에 내독간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표 7>이 이를 보여준다.²⁰

²⁰ Wulf D. v. Lucius, "Die Zusammenarbeit der Gustav Fischer Verlage in Stuttgart und Jena 1953 bis 1989," in: Mark Lehmstedt and Siegfried Lokatis eds., *Das Loch in der Mauer*, pp. 198~206.

<표 7> 구스타프 피셔 출판사의 내독간 협력

슈투트가르트 피셔 출판사의 총 거래액		그 중						내독간 협력의 비중
		에나 출판사의 책·잡지 수입판매액		슈투트가르트 출판사 책·잡지의 동독(라이프찌히)내 공동출판과 판매액		에나 출판사 책·잡지의 슈투트가르트내 공동출판과 판매액		
년	백만DM	백만VE	%	백만VE	%	백만DM	%	%
1960	2.0							(33.0)
1965	3.0	(0.15)	5.0	(0.30)	10.0	(0.40)	13.3	(28.3)
1970	4.2	0.21	5.0	0.45	10.7	(0.45)	10.7	26.4
1975	7.8	0.29	3.7	0.378	4.8	(0.60)	7.7	16.2
1979	10.5	0.31	3.0	0.387	3.7	(0.57)	5.4	12.1
1989	16.6	0.63	3.8	0.365	2.2	(0.70)	4.2	10.2

() = 추정치

한편 동독정부는 서독 내에 자국 출판사의 지사를 설립하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동독은 자국의 '아우프바우 출판사'(Aufbau Verlag)의 서독내 지사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를 위해 동독 문화성장관 요하네스 베허 박사(Dr. Johannes R. Becher)에 보고된 다음의 비밀문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독내 지사의 설립은 첫째,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독 내에 진보적 성향의 서적 출판사를 설립하거나, 둘째, 기존의 출판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설립된 출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르조아적인 출판사에 의해 보류 혹은 거절된 동시대 독일 좌파 저자의 책들을 출판한다. 이러한 저자에는 Heinrich Mann, Becher, Seghers, Feuchtwanger, Bredel, Uhse, Renn, Frank 등이 포함된다.

둘째, 동시대의 소련 저자들이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작품을 출판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작품은 서독 내에서 아직 출판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출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에는 Gorki, Alexej Tolstoi, Scholochow, Fedin, Fadejew, Makarenko, Kisch, Majerova 등이 포함된다.

셋째, Puschkin, Turgenjew, Gogol, Prus, Jirasek 등과 같은 클래식한 작품들을 출판한다.”²¹

²¹ Carsten Wurm, *Der frühe Aufbau-Verlag 1945~1961* (Wiesbaden, 1996), pp. 179~185.

라. 문학작품의 교류 현황

동독의 문학작품 가운데 서독에서 출판된 작가, 작품명 및 출판권수는 <표 8>과 같다.²²

<표 8> 서독에서 출판된 동독 문학작품

작가	작품명	출판권수
B. Brecht	Mutter Courage	2.42백만
B. Brecht	Galilei	최대 1백9십만
U. Plenzdorf	Die neuen Leiden des jungen W.	최대 1백7십만
B. Apitz	Nackt unter Wölfen	1백만 이상
A. Seghers	Das siebte Kreuz	최대 8십만
R. Kunze	Die wunderbaren Jahre	625,000
Ch. Wolf	Kassandra	500,000
Ch. Wolf	Kindheitsmuster	400,000
Ch. Wolf	Nachdenken über Christa T.	2십5만 이상
A. Seghers	Transit	최대 2십만
H. Kant	Die Aula	157,000
U. Plenzdorf	Legende vom Glück ohne Ende	100,000
Ch. Wolf	Was bleibt	40,000
E. Loest	Es geht seinen Gang oder Mühen in unserer Ebene	28,000
U. Plenzdorf	Kein runter kein fern	17,000

IV. 결 론

통일 이전 동서독 간에 추진되었던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장벽 속의 구멍’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통일 이후 구 동서독출신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바와 같이, 출판분야 교류·협력은 동서독 주민간 공감대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와 체제로 받아들여 결국 스스로 동독을 무너뜨리고 통일로 이르는 행진을 시작하는데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기여하였음은

²² Egbert Meyer, *DDR-Literatur in Westdeutschland* (Frankfurt a. Main, 1994), p. 201.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반도의 평화변영과 평화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지향하는 우리에게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특히 서독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은 통일을 향한 전제조건이 양 독일에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논의보다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양독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부단히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민족적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중시하였으며, 출판분야 교류·협력도 그 연장선 상에서 부단히 추진하였다. 또한 동독과의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독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나, 서독은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일관된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유지·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서독은 대동독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하나의 문화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양독 주민 간의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보존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독은 출판분야를 포함하는 『문화협정』을 동독과 체결하였다.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이러한 법적 제도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셋째, 서독은 문화협정의 체결시에 교류·협력 당사자의 비국가성(非國家性, Nichtverstaatlichung), 즉 문화당사자들끼리 교류하도록 하고 국가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국 및 비당국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도 여기에 힘을 입은 바가 컸다.

넷째, 동독이 출판분야 교류·협력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란 점을 감안하여 서독은 동독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동독이 원하는 방법(예를 들어 교류·협력의 초과분을 동독에 인쇄용역을 주어 상쇄하는 방안), 동독이 원하는 분야(예를 들어 동독이 사회주의권에서 조달할 수 없으면서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학술서적 혹은 전문 과학·기술·경제서적 등에서의 교류·협력)를 받아들였다. 특히 동독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서적의 전시, 판매, 인쇄 등 다양한 유형의 출판분야 교류·협력에서 동독이 경제적 이해를 얻도록 하되 그것이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노력해야 할 남북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출판분야를 포함하는 『남북문화협정』(가칭)의 체결에 노력해야 하며, 향후 북한과 논의할 문화협정 그

리고 출판분야를 포함하는 세부 관련 협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남북한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남북 문화협정과 『남북출판협정』(가칭)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협정에 있어서는 교류·협력의 당사자를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서 당국 및 비당국간 문화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은 쌍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단체 혹은 문화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출판협정의 경우 이에 근거하여 출판관련 남북한의 기구·단체나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체결하도록 한다.

둘째, 국내의 출판관련 당사자나 관련 기구·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출판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반관·반민의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남북 출판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활성화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남북출판협정도 여기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 측의 경우 출판분야의 교류·협력이 경제적 거래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환이므로, 서독의 경우를 참조하여 통일부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 경제부처가 참여하도록 한다. 민간 측의 경우 출판분야 관련 기구·단체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이를 지원·자문케 하고, 언론이나 기타 사회단체들도 참여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촉진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도록 관심있는 관련 국제기구·단체 혹은 개인·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한다. 남북출판교류협력위원회는 소속회원의 성금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셋째,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고려하는 바탕위에 접근방법, 분야선정 및 추진방법을 모색한다. 출판분야 교류·협력은 남북간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체제유지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 힘든 문제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이념적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뿐만 아니라, 북한이 문화의 정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또 다른 교류·협력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판이하다시피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는 제한적 교류로서 남북한이 고서적목록이나 출판물목록의 교환을 통해 상호 출판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 전문학술서적의 교류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의 이러한 노력

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한과 문화·출판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모색한다.

제2단계는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로서 남북은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 당국 간에 문화협정을, 관련 당사자 간에 출판협정을 체결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시사잡지의 대중적 교류도 추진한다.

제3단계는 남북관계가 ‘남북연합’으로 진입하는 전후의 시기로서 남북한이 전 출판물의 교류 뿐만 아니라, 출판사 및 거래유통망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상의 단계들이 반드시 분리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중첩적·복합적으로도 추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구도아래 현 단계에 있어서 출판분야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란 추진방법상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래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일부 노정되었던 경쟁적·대결적 태도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냉전적 기획, 그리고 상대방에게 문화적 자극과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극복되어야 한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을 민족의 평화번영에 둔다는 정부 대북정책의 이념적 원칙에 상치되며, 탈냉전적·평화공존적 시대적 맥락에서 상호 독자적인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는 상호 신뢰 및 상호 인정의 열려 있는 교류의 틀을 확립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고려사항은 동등과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이 출판물 교류·협력에 소극적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주의원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관련 전문·학술서적의 일방적 대북 반출을 수용하며, 남북한이 공개적인 출판물전시회(현 단계에서는 비정치적·비이념적 성격의 출판물을 중심)를 개최할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개최빈도와 남한에서의 개최빈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만의 개최도 수용하는 탄력성을 보여준다. 또한 출판물전시회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남한이 좀 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유지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일방통행식의 교류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되 차별적이나 상호적인 이해관계를 관찰하려는 자세는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

분야선정의 경우 가능한 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문, 북한이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좀 더 쉽게 응해오리라고 여겨지는 부문(예를 들어 민족문화관련 출판물), 혹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문(경제관련 전문·학술서적의 교류, 공동출판의 경우 북한이 자료·정보를 제공하되 이에 대한 대가를 남측이 지원하고 판매시장 개척과 판매를 통

한 이익을 지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동독의 경우 경제적 발전과 외환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서독과 교류·협력에 응하였듯이, 북한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에게 출판물 교류·협력의 경제적·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출판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나가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상호 이해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교류·협력의 폭과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는 출판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간을 지원한다. 남북한 민족적 공감대 형성, 문화발전과 문화적 통합을 위해 정부가 출판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에게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남북 출판분야 교류·협력사업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예를 들어 통일사전 편찬)를 가지거나, 남북한 교류·협력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